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237846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대전도시공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

18.55m²(C호)를 인도하고,

나. 2024. 2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박우근

별지